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23

발 의 자 : 정해원 위원 외 6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정하고, 지방자치법(법률 제8423호, 2007.5.11 공포·시행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10.4 공포·시행)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)
- 나.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월 3,483,300원으로 함.(안 제3조제2항)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2008년도 예산편성(안) 반영

6. 기타사항 : 마포구청총무과2007-1(2007.10.29)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

**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
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”로 하고,
“동법시행령 제15조”를 “동법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월 2,052,500원”을 “월 3,483,3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생략)</p> <p>②월정수당은 월 2,052,500원으로 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월정수당은 월 3,483,300원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